

을지로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세칙 개정 공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0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28조에 따라 을지로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세칙이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20일
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동장

